

이용 계약의 관한 사항

제 1 조 (계약목적)

장기요양기관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노인성질환 및 노화와 관련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에 시설은 보호자 당사자들간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서로 계약 의무를 다함으로 어르신이 안전하게 시설에 계시고,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데 계약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 쌍방 준수 의무)

- (1) 장기요양기관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입소하신 어르신이 본원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성실히 어르신을 모시며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 (2)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는 계약사항을 숙지하고 준수 의무를 수행한다.
- (3) 계약 쌍방인 시설과 어르신(보호자) 모두는 아래 각 항목사항 숙지하여 준수 의무를 다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증서 등급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까지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며, 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등급이 갱신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에 맞춰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연장한다. 보호자는 계약기간을 만료하려고 할 시 적어도 1주전에 시설에 알려야 하고 계약건에 대해 상의해야 하며, 시설 또한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관계를 확인하며 보호자의 특별한 변경약속이 없을 시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정원이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등) 보건복지부 지침변경 시달로 인한 계약내용부분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될 수도 있다. 또한, (고양)하늘소리 요양원 입소어르신, 보호자 모두가 원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시설에서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전에 가족과 상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유선으로 상의 및 통보할 수 있다.

제 4 조 (입소 및 이용료 납부)

1. 수가 및 비급여 부담금

요양비는 위의 설명과 같으며, 입소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변동, 관련 법규의 변동 및 급격한 물가 상승이 있을 경우 변동 될 수 있다. 장기요양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기로 한다.

2. 기타 비급여 부담금

기본원칙의 항목은 촉탁비,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구성하며 기본적인 시설 요양비와 비급여 항목 외에 입소 어르신 개인이 원해서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부담금(약값, 개인보조기, 병원진료비 등 기타 개인 개별 관련 비용)은 전액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개별 물품, 용역 및 희망프로그램 비용

어르신의 요구나 보호자 요청에 의해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4. 이용료 납부

보호자께서는 매월 첫째주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 및 기타(개별부담금) 전액을 합한 장기요양비를 시설명의로 계좌로 선지급 입금한다.

((고양)하늘소리요양원 - 하나은행 - 580-910012-01904) 요양비가 2회 이상 연체 시 어르신을 자진 퇴소 조치하여 보호자 주소지로 이동시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5 조 (계약자의 의무)

(고양)하늘소리요양원, 입소어르신과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 (1) 표준 노인장기요양급여제공의 성실한 제공 의무(건강관리 및 식사제공, 생활상담, 조연 및 생활편익제공)
- (2) 입소어르신의 안전한 생활시설여건 조성 및 제공의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3) 입소어르신이 위생적 환경에 잘 계실 수 있도록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무
- (4) 입소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계약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2. 입소어르신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 (1)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이 제시한 시설 생활 규칙의 준수 및 직원이 성실하게 수발하는데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조할 의무
- (2) 월 이용료 및 제 부담금 납부 의무
- (3)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4)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 의무
- (5) 각종 프로그램 참여의무 및 시설생활 규칙 이행

3.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 (1)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이 제시한 시설 생활 규칙의 준수 및 직원의 정당한 제시에 협조할 의무
- (2) 입소어르신의 병증 상태 및 요양에 필요한 사항의 설명
- (3) 월 이용료 및 제 부담금 납부 의무
- (4) 연락처 등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제 6 조 (무연고 처리)

월 이용료 연체 및 무단으로 3개월 이상보호자와의 연락 두절된 상태로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시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입소하신 어르신을 무연고자로 시정 사회복지과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보호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7 조 (계약해지 요건)

1.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어르신의 사망 혹은 생명이 위중하여 병원에 이송되어 재입소를 못함을 통보할 시
- (2) 병원 입원일이 10일을 초과 하였을 시(장기요양급여 자동 해지됨으로 시설장과 협의)
- (3) 어르신이 법정전염병/감염병 소지자로 판정될 시
- (4) 이용료를 사전 의논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시
- (5) 어르신이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시
- (6) 어르신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의 심한 치매증상, 돌발적인 이상한 행동,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어르신의 안전과 인권에 막대한 지장을 줄 시
- (7) 어르신이 골다공증이 심한데도 본원에 미 통보하여 문제가 발생될 때

2.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는 본인 자유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해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고양)하늘소리요양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유선으로 통보도 가능).

제 8 조 (퇴소)

1.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입소어르신과 보호자는 퇴소 통지를 받거나 자진 퇴소시 본 요양원의 퇴소 절차를 거쳐 퇴소관련서류에 서명하고 어르신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도록 한다. 단, 사유물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음에도 3개월 이상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요양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의사로 퇴소할 시 급작스런 상황외에 퇴소 시기1주 전에 (고양)하늘소리요양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퇴소 시 월 이용료는 일할 계산하며,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5. 특별한 상호 약속 없이 10일을 초과하여 퇴실 시 본원과의 계약은 자동 해지(퇴소처리)된다.

제 9 조 (입소물품)

1. 어르신은 시설 입소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사전에 (고양)하늘소리요양원과 협의하여 반입 후 사용한다.
2. 금, 은, 귀금속(반지, 목걸이 등)은 입소 시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착용 금지한다.
단 분실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시는 허용한다.
3. 고가의 의류는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반입을 허가하지 않으며 꼭 필요시는 사용 한 후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생활의복 및 개별 물품 반입시 담당요양보호사와 요양보호팀장이 가족과 확인, 물품리스트에 기록 서명 날인하며 입소물품에 이름을 기록해서 반입한다.
4. 필요한 중요 물품은 사무실(시설장, 사무국장)에 알려 재 확인하게 함으로 사무실 직원이 파악, 수시 확인 점검관리 하도록 한다.
5. 입소 후 생활하시는 중간에 필요물품 유입시에도 물품리스트에 담당요양보호사와 확인하여 서명 날인한다.
6. 담당요양보호사와 요양보호팀장이 입회하여 가족과 함께 물품리스트에 서명 날인된 개인물품에 한해서 시설에서 책임을 진다.(요양보호팀장은 중요물품이라 판단 시 사무실에 알린다)
7. 한약이나 건강식품 반입시 간호팀에게도 알려주셔서 함께 드실 시 부작용 점검 및 관리 시 재차 확인 되도록 한다.

제 10 조 (요양생활- 요양실의 배정, 식사 및 간식, 면회, 외출외박)

1. 요양실의 배정

- (1)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어르신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시설여건 및 어르신 개인별 상황(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어르신의 방을 재배치 할 수 있다.
- (2) 보호자 및 어르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케어 담당자와 어르신과의 문제 상황이나 요양실 내부 구성원과의 문제상황 시, 또 시설상황에 의해서도 가족과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식사 및 간식

- (1)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1일3식 및 간식을 제공하며 식단표 및 간식 제공 계획에 대하여 공개 게시한다.
- (2) (고양)하늘소리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시설장과 반드시 의논하여 협의하에 반입한다.
- (3)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단체급식시설이므로 한끼니(최대 하루분) 분량 이상의 개별음식은 제한하며, 조리를 필요로 하는 개인별 음식은 요양원 내에 반입할 수 없으며,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설사 등 위장장애 등)에 따라 음식조율이 필요하므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문의한 후 반입해야 한다. 또한, 음식으로 인해 유발적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음식은 반입 금지한다. 특히, 연하작용 문제가 있는 어르신은 고구마, 떡, 빵 등은 절대 금지하며, 보호자가 위와 같이 알려 드렸음에도 반입하여 그로 인해 입소자가 상해 및 사망에 이르는 시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4) 알려지 유발우려음식을 반입해서 보호자가 제공하고 남은 경우 가능한 가져가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담당요양보호사에게 반드시 설명하고 꼭 드실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가 되도록 한다. 인계가 안되어 어르신이 임의로 먹어 사망에 이르는 사고 시 시설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5) 간식은 일당 2,000원 상당의 비용에 한해서 제공되며 아침은 한방차 및 기타 기호도를 반영한 선정된 차를 제공하며 오후에는 의견수렴 된 항목을 반영한 다과 및 음료를 영양사의 주간별, 월별 계획서에 의거하여 제공한다. 단 시설상황에 의해 품목이 변경될 수도 있다. 또한 개별간식으로 어르신(보호자) 요청에 의해 보호자가 준비해준 간식을 담당요양보호사가 어르신 특성과 질환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춰 지급한다. 이에, 간호사나 영양사의 어르신 상태에 따라 지급에 관여하여 조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설장이 보호자에게 알리며 보호자 와 협의수정 및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외출과 외박

보호자는 어르신과 같이 외출 또는 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외출, 외박신청서에 신청하고, 외출 또는 외박을 하도록 한다. 또한, 외출, 외박 중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 어르신 신변에 변화가 발생할

제 11 조 (신체제재지침 및 동의)

- (1)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어르신 본인과 다른 입소어르신, 직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될 때, 보호자에게 **신체제재 지침**을 숙지시키고 **신체제재 관련 사항 알림 동의서**를 받은 후 어르신의 신체제재를 할 수 있다.
- (2) 휠체어 이동 시 개인에 상황에 따라 낙상위험도에 의해 안전벨트 개념으로 벨트를 하는 것을 이해한다.
- (3)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어르신의 안전과 상해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자와 시설장이 충분히 협의하여 어르신 최소한의 신체제재적용을 결정하며 신체제재 해당경우 최대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실행하며 보호자는 이에 동의하며 지면을 통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별첨 1 참조).
- (4) 수급자제재는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보건복지부, 2006)에 의거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다른 입소 수급자 및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에 한하여 보호자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제 12 조 (건강관리(의료, 재활케어 등)및 필요시 의료 이용절차)

1.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어르신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が必要하다고 판단할 경우 촉탁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촉탁의 및 촉탁병원과 연계하여 월 2회 이상의 정기적인 진료를 받게 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촉탁병원과 연계적으로 시설방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건강이상 시 지체없이 가족에게 통보하여 추가 조치하도록 한다.
3. 촉탁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1회 이상 정기적인 외래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별도 징수한다. 만약, 요양원과 연계된 의료시설이 아닌 다른 의료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과 주 보호자가 중요사항을 상의한 뒤, 이송하여 치료를 계속하도록 한다. 타시설에서의 추가적인 치료가 요하는 상황의 이송 및 진료 전반적인 책임은 보호자가 지도록 한다.
4.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입소어르신 건강관리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와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도록 조치하며 입소어르신의 건강 이상 시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5.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입소시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고, 입소어르신이 입소하셔서 생활하시는데 있어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건강유지 및 악화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 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7.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입소 어르신의 인지 및 신체재활을 위하여 물리치료, 작업치료, 단체 및 개별 치매예방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이 병원치료 여부를 보호자에게 확인하고 본 요양원에 서의 치료 한계를 설명한다. 응급실 후송 거부등 보호자의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후차적 결과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9. 입소 어르신의 건강 및 요양생활 관련하여 의논이 필요할 경우 입소시 계약서를 작성한 보호자를 주보호자로 우선 연락하여 상담하며, 시설생활과 관련되어 중요사항을 통보하여 알려주도록 한다. 단, 주보호자 사정에 의해 다른 보호자로 주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일임한 경우당 보호자가 본 요양원 시설장과 의논하도록 한다. 본 요양원의 시설장이 주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상담한 사항이 주보호자를 제외한 다른 보호자에게 미전달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시설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13 조 (낙상 및 사고 발생 처리)

1. 어르신이 낙상이나 기타 사고 발생시 즉시 가족에게 통보하여 의논 대처한다.
2. 긴급 상황이라 판단되어 가족과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두절 시 시설에서 먼저 어르신을 이송 응급 조치를 취하게 한다.
3. 지병 및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로 어르신 본인의 부주의로 낙상 및 기타 사고 발생시 요양원에게 책임을

제 14 조 (응급상황발생 위급시 조치 및 임종 및 장례)

1. 응급상황 위급 발생시 대응지침

- (1)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어르신의 생명의 위급 등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된 때에는 2차, 3차 병원등 관련의 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2)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어르신이 후송된 의료기관과 연락 대면 대처하여야 한다. 단, 즉시 대면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하여야 한다.
- (3) 개인치료 경비 일체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임종 임박시 대응지침 및 장례

- (1) 임종이 임박하였을 경우 조치 및 타 의료시설 입원 관련사항을 보호자와 시설장이 상의하여 결정한다. 어르신 상태에 따라 보호자와 수시로 연락하여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어르신을 케어하며, 그에 따른 결과는 보호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 (2) 장례에 대해 가족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가족의 정함에 따라 장례절차에 모든 것을 가족이 수행한다. 가족은 상조 및 장례식장을 선정하여 차량이송 등 협의하여 정하여 시설장에게 알린다.
- (3) 무연고자인 경우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임종시 대응지침

- (1)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어르신이 임종하였을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며, 보호자와 상의 하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절차는 보호자 의견에 따른다.
- (2) 장례관련 절차는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 15 조 (시설관리 및 시설물 배상 책임 여부)

1. 시설 관리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침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설물과 요양실 및 거실 등을 재배치 할 수 있다.

2. 시설물 배상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입소어르신은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의 시설물을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시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물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그에 대해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 (배상책임)

계약과 관련된 배상책임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시설관련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어르신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상한음 식 제공 및 가족과 상의되지 않은 투약사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시설장비 및 시설관리가 미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직접적 학대가 발생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어르신께 배상할 의무를 지닌다.
2. 요양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의 직접적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르신과 보호자는 (고양)하늘소리요양원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의무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해주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4. 어르신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의 심한 치매증상, 돌발적인 이상한 행동,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타 어르신과 본 시설의 직원에게 직접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 어르신과 보호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 17 조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의 면책)

어르신과 보호자는 어르신의 기왕증, 합병증, 특이체질 등 정신적, 신체적 특수성으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고양)하늘소리요양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어르신의 질병(예:심근경색, 치매…)이나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어르신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고의 또는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 탈골 및 골절, 인대손상 등의 상해 및 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
6. 입소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18 조 (개인정보 보호 의무)

1. 개인정보 활용

- (1)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어르신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2)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장기요양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고양)하늘소리요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관련자)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3) 보호자는 본인 및 입소 어르신의 주민번호 및 전화번호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적 정보를 시설상담직원들의 문익에 따라 문서 및 상담시 제공한다. 이 모든 개인정보는 어르신의 요양을 위한 요양급여제공 관련 사항으로만 사용한다.
- (4) 요양급여제공 중 취득하게 된 개인적 정보 및 서류로 취합된 자료는 급여제공관련자들이 요양급여서비스를 위해 활용하는데 동의한다.
- (5)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2. 개인정보보호의무 및 알 권리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은 입소어르신과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어르신의 케어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이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입소 어르신 및 보호자가 알 권리가 있음을 주지시킨다.

3.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활용동의서

어르신과 보호자는 시설내부 규정에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있음을 안내 받았으며 어르신과 보호자는 보호지침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에 서면 동의한다 (별첨2 참조).

제 19 조 (기록 및 공개)

어르신의 생활과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이 어르신께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관련 서류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요양생활기록지를 공개해야 한다.

제 20 조 (입소계약서 해석)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 상규에 따른다.

1. 입소계약서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 (고양)하늘소리요양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민사소송법상의 (고양)하늘소리요양원주소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 계약 당사자는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